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조신형의원외 5인

2. 건 명: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

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별 첨

4. 검 토 의 견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29일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박춘용

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5월 20일 조신형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5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대전광역시공무원교육원의 대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체육시설중 대운동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함(안 별표 1). 나. 법 명칭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함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 안은

주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시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공무원교육원의 대운동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